

2002. 12.

條例案審查報告書

○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運營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2002.11.18	11.30	12.23	12.23	의정담당

2. 제안설명요지

1) 제안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타 상임위원회와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12명으로 함.
-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시·군·구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의원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고,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4개 이내,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데 모두 운영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일본의 자치법에는 명문규정(각자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있으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의회운영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를 3명 늘리고, 위원을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위원정수를 늘림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간사까지 포함하는 것도 타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 운영위원회 위원에 타 상임위원회 간사까지 포함시킬수 없나?
- 답변 : 간사까지 포함시키면 위원정수가 14명으로 너무 과대함.

5. 심사결과

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붙임

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